



1. 왜 선거구 조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중 하나는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경계가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권한 부여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화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조정위원회(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위원회”)는 재임 중인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공평하게 선거구를 지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선거구역이 귀하의 커뮤니티를 가능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유사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 커뮤니티와 함께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귀하의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귀하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품질 및 자원 조성 또는 귀하의 세율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하의 목소리가 귀하가 선출한 대표들에게 들리도록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새로운 정치적 경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어떻게 참여합니까?

위원회에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 기간 중 참여: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귀하는 이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전화로 또는 회의 개최 이전에 컴퓨터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대중 의견 수렴 회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회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참여:

귀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음 주소로 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otersFirstAct@crc.ca.gov 또는 “Draw My Community” (내 커뮤니티 그리기) 툴을 사용해 귀하의 지도를 만들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rawMyCACommunity.org.

전화로 참여:

(916) 323-0323

서면 참여:

귀하의 의견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
721 Capitol Mall, Suite 260
Sacramento, CA 95814



커뮤니티 기반 조직(CBO)을 통한 참여: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공동의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다양한 CBO 들이 있습니다.

3. 나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귀하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위원회가 귀하로부터 알아야 할 네 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 귀하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경제, 사회 및/또는 문화적 관심사항.
-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를 위해 귀하의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 귀하의 커뮤니티가 위치한 장소.
- 귀하의 커뮤니티가 함께 묶이기를 원하는, 또는 묶이기를 원하지 않는 주변 지역은?

“Draw My Community” (내 커뮤니티 그리기) 툴을 사용해 지도를 작성하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귀하의 커뮤니티를 묘사하십시오: DrawMyCACommunity.org.

4. 이익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헌법은 효과적이며 공정한 대표를 목적으로 하나의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를 이익 공동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이익 사례는 도시 지역, 외곽 지역, 산업 지역 또는 농업 지역에 공통된 것들이며, 유사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고, 동일한 교통 시설을 사용하며, 유사한 근무 기회가 있거나,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동일한 대중매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공통된 것들입니다. 문화 커뮤니티 역시 이익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 공동체에는 정당, 재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 10년마다, 연방정부가 업데이트한 인구 정보를 발표한 후, 캘리포니아는 선거구가 주의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의회, 주 상원, 주 의회위원회 및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경계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6. 위원회란 무엇입니까?

위원회는 의회, 주 상원, 주 의회위원회 및 주 조세형평국의 선거구역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공개 신청과 검토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캘리포니아 시민 그룹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스스로 선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유권자 우선 법안(Voters FIRST Act)을 통과시켰을 때 독립된 위원회 조성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주 상원, 주 의회위원회 및 주 조세형평국의 새로운 선거구역을 지정하도록 승인했습니다. 2010년에, 의회에 제출한 유권자 우선 법안은 의회 선거구 지정 업무를 위원회 권한으로 추가했습니다.

선출된 의원들로부터 선거구 조정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해당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역을



조정해 특정 정당 또는 그룹을 위해 부당한 정치적 이익을 구축하기 위한 관행입니다. 게리맨더링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전략으로는 "갈라놓기"(예: 여러 선거구에 걸쳐 반대당 지지자의 투표권 약화) 및 "뭉기"(다른 선거구의 반대당 투표권을 축소시키기 위해 반대당의 투표권을 하나의 선거구로 집중)가 있습니다.

7. 위원회에서는 누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14 명으로 구성됩니다. 5 명은 민주당원, 5 명은 공화당원, 그리고 4 명은 어느 쪽 당의 출신도 아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유권자들은 위원회에 임명되기 직전 5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정당에 지속적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정당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지난 3 번의 주 전체 총선에서 최소 2 번 투표한 경우에 위원회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0 년 내에,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캘리포니아 의회 또는 주 사무실에 임명, 선출 또는 후보였던 경우, 캘리포니아 정당 또는 캘리포니아 의회 후보 또는 주 선출직 사무실의 캠페인 위원회 직원, 고용인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근무했던 경우, 또는 등록된 로비스트였던 경우 해당 유권자는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8.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초기 및 추가 신청서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세 명의 독립 감사관으로 구성된 지원자 검토단(Applicant Review Panel)(검토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단은 당파에 의해 세 개의 동일한 분과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120 명의 "가장 적격인 지원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은 이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그룹은 이후 동일한 세 개의 분과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60 명의 지원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검토단은 이러한 60 명의 지원자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각 분과 그룹에서 8 명씩, 목록에서 최대 24 명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과 그룹에서 삭제되지 않은 신청자의 이름들은 이후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세 개의 분과 그룹에 남아 있는 이름 중 무작위로, 세 명의 민주당원, 세 명의 공화당원, 그리고 그 어느쪽 당도 아닌 두 명의 이름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8 명의 지원자가 위원회의 첫 8 명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첫 위원인 이 8 명은 이후 세 개의 분과 그룹별로 위원 2 명씩을 선정하여 6 명의 최종 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9. 위원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까?

위원들의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또는 최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일주일에 10 에서 40 시간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적은 시간을 그리고 지도를 마무리짓기 위한 기한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회는 독립체로 운영하며 해당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고용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그 일정을 스스로 정합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날 장소, 얼마나 자주 만날지,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 공청회를 개최할지, 얼마나 많은 직원을 어떤 목적으로 채용할지, 그리고 기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10. 여론 수렴 회의는 얼마나 많이 개최하게 됩니까?

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서 또는 정보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Bagley-Keene** 회의 공개법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횟수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청회에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지, 또는 위원회의 일부 위원만 참석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11. 위원회를 규제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캘리포니아 헌법, 제 XXI 조
2. 정부법(제 8251 - 8253.6 항) 및 선거법
3. [캘리포니아 규정집](#)
4. 미국 헌법
5. 미국 법전
6. 선거권법 (Voting Rights Act)

12. 선거권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합니까?

연방정부의 선거권법이 1965년에 통과되기 이전에 많은 주에서는 관행상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자격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읽기 및 쓰기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른 주들은 그 또는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투표가 허락되었던 경우에만 해당 개인의 유권자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선거권법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시켰습니다.

1970 년대에, 의회는 새롭게 등록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어떻게 선거구역을 지정하고 조작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선거권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을 포함해 모든 인종 및 언어상 소수 민족을 보호합니다.

위원회는 최종 지도가 선거권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과 법률 및 전문가 자문을 고려할 것입니다.

선거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justice.gov/crt/about/vot/redistricting.php>.

13. 지도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합니까?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라, 위원회는 선거구 지도를 작성할 때 다음 순서로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선거구는 미국 헌법에 따라 반드시 인구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선거구는 소수 민족이 본인들의 선택에 의한 대표 선정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선거구의 모든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선거구는 반드시 모두 인접해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4. 선거구는 가능한 한 도시, 카운티, 지역 및 이익 공동체의 분리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5.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조밀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가 더 먼 곳의 인구로 인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모양이 아닌 밀도를 의미합니다. 인구조사 블록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6. 가능한 경우 각 상원 선거구는 두 개의 완전하며 인접한 의회 선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10 개의 완전하며 인접한 주 상원 선거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재직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거주지도 지도 작성에 고려되지 않을 것이며, 선거구는 재직자, 정치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또는 차별할 목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4. 새로운 선거구 경계는 어떻게 승인을 받습니까?

위원회는 의회 선거구, 주 상원 선거구, 주 의회위원회 선거구,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지리적 경계가 합리적으로 동일한 인구를 포함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 년 위원회는 이익 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회의가 저녁 그리고 주말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선거구의 지리적 경계에 동의한 후, 선거구는 네 개의 지도에 표시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는 개정된 의회 선거구를 표시하고, 두 번째 지도는 개정된 주 상원 선거구를 표시, 세 번째 지도는 개정된 주 의회위원회 선거구를 표시, 그리고 네 번째 지도는 개정된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를 표시할 것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각 지도는 최소 세 명의 민주당원 위원들, 세 명의 공화당원 위원들, 그리고 세 명의 그 어느 쪽 당도 아닌 위원들로부터 동의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위원회가 최종 지도들을 승인한 후, 해당 지도들은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한 보고서와 함께 주무장관에게 제출됩니다.

15. 위원회는 언제 지도를 완성합니까?

캘리포니아 헌법은 2021 년 8 월 15 일에 지도에 대한 공인을 받도록 기한을 설정했으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인구조사 결과의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에게 2021 년 12 월 15 일까지 지도를 제출하도록 2020 년 7 월 17 일 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2021 년 7 월 31 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인구조사국에서는 이미 이처럼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있음), 위원회의 기한은 이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